

## 부산광역시사하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1
----------	---

제출년월일 : 2002. 7. 15

제출자 : 사하구청장

### 1. 개정이유

을숙도문화회관 신규 시설의 운영·관리를 위하여 증원된 정원을 공무원 정원 총수에 반영하는 등 정원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개정하려는 것임

### 2. 주요 골자

- 가. 구 공무원 정원의 총수 "664명"을 "680명"으로 하며, 그 중 집행기관의 정원 "649명"을 "665명"으로 함(안 제2조)
- 나. 구조조정에 따라 발생한 초과현원을 합리적으로 해소하기 위한 행정자치부의 유예기간 연장방침에 따라 직종별·직급별 초과 현원에 대한 유예기간을 법정기한(2003. 2. 28)까지 연장함  
(조례 제461호 부칙안제3조 제3항)

### 3. 관계 법령

-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등에관한규정(대통령령) 제21조 및 대통령령(제17624호, 2002. 6.10자 관보)
- 행정자치부의 「을숙도문화회관 기구·정원승인통보서」

## 부산광역시사하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

부산광역시사하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 본문중 “664명”을 “680명”으로 하며, 동조 제1호중 “649명”을 “665명”으로 한다.

조례 제461호(‘99.8.2) 부칙 제2조중 「표3」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「표3」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방공무원 정원표

구 분	정 원
정원의 총수	680명
1. 집행기관의 정원	665명
2. 의회사무국의 정원	15명

조례 제461호(‘99.8.2) 부칙 제3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③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직종별·직급별 정원과 현원이 불일치한 경우에는 직종별·직급별 정원에 대한 결원의 총수 범위 안에서 초과 현원에 해당하는 정원이 2003년 2월 28일까지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.

### 부 칙

이 조례는 2002년 8월10일부터 시행하되, 조례 제461호(‘99.8.2) 부칙 제3조 제3항의 개정규정은 2002년 8월1일부터 적용한다.

## 신 · 구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																
<p>제2조(정원의 총수) 구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는 <u>664명</u>이며, 다음 각 호와 같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1. 집행기관의 정원 : <u>649명</u></li> <li>2. 의회사무국의 정원 : 15명</li> </ol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부 칙(조례 제461호)</p> <p>제2조(생략)</p> <p>「표3」 부산광역시사하구지방공무원 정원표</p> <table border="1" style="width: 100%; border-collapse: collapse; margin-top: 10px;"> <thead> <tr> <th style="width: 70%;">구 분</th> <th style="width: 30%;">정 원</th> </tr> </thead> <tbody> <tr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정원의 총수</td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<u>664명</u></td> </tr> <tr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1. 집행기관의 정원</td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<u>649명</u></td> </tr> <tr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2. 의회사무국의 정원</td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15명</td> </tr> </tbody> </table> <p>제3조①~②(생략)</p> <p style="margin-left: 20px;">〈신 설〉</p>	구 분	정 원	정원의 총수	<u>664명</u>	1. 집행기관의 정원	<u>649명</u>	2. 의회사무국의 정원	15명	<p>제2조(정원의 총수) ----- ----- <u>680명</u> ----- -----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1. 집행기관의 정원 : <u>665명</u></li> <li>2. -----.</li> </ol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부 칙(조례 제461호)</p> <p>제2조(현행과 같음)</p> <p>「표3」 부산광역시사하구지방공무원 정원표</p> <table border="1" style="width: 100%; border-collapse: collapse; margin-top: 10px;"> <thead> <tr> <th style="width: 70%;">구 분</th> <th style="width: 30%;">정 원</th> </tr> </thead> <tbody> <tr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정원의 총수</td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680명</td> </tr> <tr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1. 집행기관의 정원</td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665명</td> </tr> <tr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2. 의회사무국의 정원</td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15명</td> </tr> </tbody> </table> <p>제3조①~②(현행과 같음)</p> <p>③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직종별·직급별 정원과 현원이 불일치한 경우에는 직종별·직급별 정원에 대한 결원의 총수범위안에서 초과현원에 해당하는 정원이 2003년 2월28일까지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.</p>	구 분	정 원	정원의 총수	680명	1. 집행기관의 정원	665명	2. 의회사무국의 정원	15명
구 분	정 원																
정원의 총수	<u>664명</u>																
1. 집행기관의 정원	<u>649명</u>																
2. 의회사무국의 정원	15명																
구 분	정 원																
정원의 총수	680명																
1. 집행기관의 정원	665명																
2. 의회사무국의 정원	15명																